

사업대상지역 범위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여면적의 87%인 6,371만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5,223만평 (전국 반환면적의 96%)이 반환될 예정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152,098만평임

(단위 : 만평)

구 분	총 계(사업대상)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경기도	34	157,342	34	5,223	152,119
북부	29	102,630	29	4,379	98,251
남부	5	54,712	5	844	53,868

□ 발전종합계획 적용대상지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역은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과 연접한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였으며 경기도 대상지역은 총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임
- 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항은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 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현황

구 분	기 지 명	소 재 지	사 업 대 상 면 적(평)
	경 기 도	51개소	1,573,436,171
	경기북부	38개소	1,026,303,323
고 양 시			19,668,55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3개 동)			19,668,550
의정부시		9개소	24,672,175
반 환 공 여 구 역	소 계		1,770,583
	캠 프 에 세 이 윤	자금동	93,019
	캠 프 레 드 크 라 우 드	가능동	252,889
	캠 프 스 탠 리	송산1동	743,403
	캠 프 홀 링 워 터	의정부1동	72,027
	캠 프 카 일	자금동	43,912
	캠 프 라 과 디 아	기능2동	41,371
	캠 프 잭 슨	호원1동	496,711
	캠 프 시 어 스	자금동	27,251
공여구역	캠 프 콩 코 드	가능1동	(3,083)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5개 동)			22,901,592
남양주시			62,632,625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4개 읍면동)			62,632,625
파 주 시		13개소	203,487,539
반 환 공 여 구 역	소 계		25,671,851
	캠 프 에 드 워 드	월롱면	76,088
	불 스 아이#1	진동면	23,631,744
	불 스 아이#2	적성면	1,390,231
	캠 프 하 우 즈	조리읍	192,392
	캠 프 게 리 오 웬	문산읍	86,254
	캠 프 자 이 언 트	파주읍	51,779
	캠 프 보 니 파 스	군내면	43,491
	캠 프 스 탠 톤	광탄면	82,060
	캠 프 그 리 브 스	군내면	71,614
	찰 리 블 러	파주읍	8,464
	후 리 덤 브 리 지	군내면	17,466
	공여구역	리 버 티 벨	군내면
	파 평 산 ATC	파평면	(4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6개 읍면동)			177,815,688

구 분	기 지 명	소 재 지	사 업 대 상 면 적(평)
포 천 시		4개소	234,474,014
반환 공여 구역	소 계		441,864
	바이오넷훈련장	창수면	441,864
	왓킨스 레인저	영북면	(38,800)
공여구역	신북 릴레이	신북면	(16,150)
	영평사격장	영중면	(4,093,456)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2개 읍면동)			220,681,163
공여구역 주변지역(1개 면)			13,350,987
양 주 시		2개소	93,847,600
반환 공여구역	소 계		3,379,464
	모 빌	남 면	3,379,464
공여구역	캠프 광사리	양주1동	(38,43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1개 읍면동)			90,468,136
동두천시		6개소	28,937,150
반 환 공 여 구 역	소 계		12,290,110
	캠프 케이시	보산동	4,278,937
	캠프 호비	불현동	4,251,417
	캠프 님블	상패동	20,171
	짐볼스	광암동	3,613,823
	캠프 캐슬	소요동	62,611
	H-220헬리포트	보산동	63,151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7개 동)			16,647,040
가 평 군		1개소	147,922,500
공여구역	화악산이브리치	북 면	(2,470)
공여구역 주변지역(3개 읍면)			147,922,500
연 천 군		3개소	210,661,170
반환 공여구역	소 계		239,145
	건트레이닝에리어	미산면	239,145
공여구역	감악산 ASA	전곡읍	(58,893)
	알라모 ASA	신서면	(9,895)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8개 읍면)			143,743,800
공여구역 주변지역(2개 면)			66,678,225
경기 남부		13개소	547,132,848
수 원 시		1개소	11,476,850
공여구역	수원 에어베이스	세류2동	(327,633)
공여구역 주변지역(9개 동)			11,476,850

구 분	기 지 명	소 재 지	사 업 대 상 면 적(평)
성 남 시		2개소	20,116,250
공여구역	K-16 에어필드	신촌동	(250,324)
	탱고	고등동	(295,011)
공여구역 주변지역(8개 동)			20,116,250
용 인 시		2개소	50,039,550
공여구역	메디슨	역삼동	(26,916)
	캠프 용인	동천동	(9,230)
공여구역 주변지역(10개 면동)			50,039,550
평 택 시		4개소	107,204,073
반환 공여 구역	소 계		871,334
	평택CPX에리어	팽성읍	132,368
	오산 니아모	고덕면	738,966
	캠프 험프리	팽성읍	-
공여구역	오산에어베이스	신장동	(2,170,63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1개 읍면동)			84,301,664
공여구역 주변지역(6개 동)			22,031,075
화 성 시		1개소	129,073,725
반환 공여 구역	소 계		7,197,915
	쿠니 에어레인저	우정면	7,197,915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4개 읍면동)			64,297,960
공여구역 주변지역(7개 읍면동)			57,577,850
광 주 시		24,895,750	24,895,75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2개 면)			24,895,750
하 남 시		22,974,875	22,974,875
반환 공여 구역	소 계		374,416
	캠프 콜번	천현동	92,786
	성남골프코스	감북동	281,63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7개 동)			22,600,459
의 왕 시		9,338,175	9,338,175
공여구역 주변지역(2개 동)			9,338,175
오 산 시		1,960,200	1,960,200
공여구역 주변지역(1개 동)			1,960,200
양 평 군		1개소	166,214,675
공여구역	베아손	용문면	(5,324)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1개 면)			36,381,675
공여구역 주변지역(6개 읍면)			129,833,000
과 천 시		3,838,725	3,838,725
공여구역 주변지역(1개 동)			3,838,725

사업대상 지역별 지원내용

구 분	법조항	반환 공여 구역	반환 공여 주변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 례 내 용
반환공여 구역등의 규제특례	제1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우선적 검토
지방자치 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지원	제14조 시행령 제1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의 매입소요경비의 일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하천 : 매입소요경비의 60~80% - 공원 : 지방자치단체 60~80%, 그 외 50%이내 • 장기분할 상환대상(5~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장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시행령 제15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공장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의 신·증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총 허용량 별도 배정 - 공업용지의 조성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면제 ※ 별첨 :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61개 업종), 접경지역 9개업종 별도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개발	제16조 시행령 제16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시설 3천만불 → 1천만불, 기타 1천~2천만불 → 5백만불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 시행령 제17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 및 증설 관련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가능 ※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 의 특례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교육기관 설립가능 ※ 대상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내
교육재정 지원 특 례	제19조 시행령 제19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지원범위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도시 사업 구역의 지정 등	제20조 시행령 제20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토지이용 지정목적에 관계 없이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구 분	법조항	반 환 공여구역	반 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 례 내 용
고용안정 사업 우선실시	제23조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 실시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지역내 사업자가 업종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규채용할 경우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 공공사업에 이용된 토지원소유자 및 그 상속인에게 생활대책 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
사회간접 자본지원	제24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시설, 전력 및 등 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지자체 추진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	제25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병원, 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 설치경우 우선 지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의 비용 우선지원
교육·문화 ·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적절히 설치·유치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지역에 설치된 시설들이 당해지역내로 이전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허가 실시
농림해양 수산업 지원	제27조 시행령 제2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 - 종합계획 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알선 및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
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 - 보조금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 - 교부대상외의 지역현안수요로 재정수요 발생시 특별교부세 지원 - 사업시행자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총사업비의 100분의 80))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 공원·녹지의 조성사업비 · 용수공급시설의공사비 · 이주대책사업비 ·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 각종 개발의 공동구의 공사비 ·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 종합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 계약을 체결 가능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가능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 사업관련 인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자주하는 질문

Q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지난 50여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개발 및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우리도가 주관이 되어 법령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법령 시행일 : '06. 9. 4

Q : 『특별법』에 의한 규제완화 및 특례조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 또는 반환되는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특별법 제3조)

-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증설, 신설(61개업종) 허용, 공장총량 별도 배정
- 수도권지역에서의 4년제 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
-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 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
- 외국인 투자 요건완화(공장시설 3천만불 → 1천만불, 기타 1~2천만불 → 5백만불)
-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는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330만㎡ 이상)

Q :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그 지역별 현황은 어떤가요

A :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인 1,572백만평이며 20개 시군의 158개 읍면동이 사업대상지역입니다

- 경기북부(9개 시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고양, 남양주
구리시를 제외한 9개 시군 82개 읍면동 1,025만평
- 경기남부(11개 시군) : 수원,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과천, 의왕, 광주, 오산, 하남, 양평
11개 시군 76개 읍면동 547백만평

Q :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Q : 특히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A : 대학교의 이전·증설, 산업단지 조성, 유통단지 시설, 휴양레포츠시설 및 관광레저사업 등 대형사업 외에도 지역단체, 상공인단체 등이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지역공단(10만평 이하), 국민관광지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이 가능 합니다

Q : 『특별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A : 우선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대상지역에 입지되어야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道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Q : 민자유치를 위한 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인지요

A : 특별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우선적으로 검토,
- 공업용지 조성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면제,
- 교통시설, 전력 등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시 우선적인 인·허가 실시,
- 사업시행을 위하여 회사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가능,
- 각종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비 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사업관련 인·허가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각절차와 민간 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요

A : ○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매각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징발해제 및 매각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매각하게 됩니다

○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Q : 실제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A :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의 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후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Q :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 치유 및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SOFA 규정에 의거 반환절차가 완료된 공여구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 매각 이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특별법 제12조)

환경오염 치유에 따른 소요기간은 오염지역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유동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유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장신설 허용업종(61개업종)

분류번호	업종내역	분류번호	업종내역
21292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4121	산업용가스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24211	의약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24221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32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3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9291	용접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933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대한 대체업종 : 9개업종》

일 반 지 역	접 경 지 역
○ 의약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레미콘 제조업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 아스콘 제조업
○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생산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일반 철물 제조업
○ 항공기 부품 제조업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 기 도 특별대책지역과(☎850-3661 ~ 4)
- ▶ 고 양 시 도시계획과(☎961-2915)
- ▶ 남양주시 도시계획과(☎590-2371)
- ▶ 포 천 시 도 시 과(☎538-2376)
- ▶ 동두천시 개발사업과(☎860-2733)
- ▶ 연 천 군 기획감사실(☎839-2817)
- ▶ 성 남 시 도시계획과(☎729-4410)
- ▶ 평택시 주민지원과(☎659-6121)
- ▶ 광 주 시 지역경제과(☎760-4606)
- ▶ 의 왕 시 도시정비과(☎345-2665)
- ▶ 양 평 군 도시건축과(☎770-2375)
- ▶ 의정부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828-4011)
- ▶ 파 주 시 균형개발과(☎940-2848)
- ▶ 양 주 시 도 시 과(☎820-2561)
- ▶ 가 평 군 도시건축과(☎580-4634)
- ▶ 수 원 시 도시계획과(☎228-2374)
- ▶ 용 인 시 도 시 과(☎324-3691)
- ▶ 화 성 시 해양개발과(☎369-3236)
- ▶ 하 남 시 기획예산담당관(☎790-5478)
- ▶ 오 산 시 도 시 과(☎370-3352)
- ▶ 과 천 시 도 시 과(☎02-3677-2366)